

- 2025년도 달서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상황 보고 -

제 안 설 명 서

2026. 1.



대구광역시 달서구

<http://www.dalseo.daegu.kr>

[청렴감사실]

제안 설명서

보고자: 청렴감사실장

2025년도 달서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상황 보고」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면,

- 고충민원처리와 그와 관련된 불합리한 제도개선 등을 통해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구정 전반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구성·운영하고 있는 달서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의 2025년도 운영상황을 「대구광역시달서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보고 드립니다.

그럼, 2025년도 달서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달서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에서 제38조 및 「대구광역시달서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민고충처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함으로써 고충민원의 처리와 그와 관련된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통해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나아가 구정 전반의 투명성과 청렴도 제고를 그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위원회는 「대구광역시달서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기존 위원의 임기가 2026. 1. 9. 만료되어 2026. 1. 1. 자로 신규위원을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임기는 2년으로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습니다.

- 위원회의 직무는 조례 제6조에 따라 고충민원의 조사와 처리 및 이와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반복적이고 고질적인 민원에 대한 조사·처리·조정·중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위원회에 위임·의뢰하는 사안의 조사 등의 직무를 수행합니다.
- 지난해 분야별 고충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은 다음과 같으며, 세부 내용은 운영상황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위: 건>

계	건축	건설	교통·주차	복지·문화	도시	청소	기타
12	8	-	2	1	-	-	1

마지막으로 향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2025년도 달서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상황에 대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9조 (운영상황의 보고 및 공표)의 규정에 의해 달서구 의회에 운영상황을 보고 후 3월중으로 공표할 예정이며, 다양한 홍보를 통해 더욱 활발하게 고충민원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 2025년도 달서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상황 보고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 달서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상황 보고

의안 번호	00926005
----------	----------

제출년월일 : 2026. 1. 21.
제 출 자 : 달서구청장
(청렴감사실장)

1. 제안이유

- 고충민원의 처리와 그와 관련된 불합리한 제도 개선 등을 통해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구정 전반의 투명성 및 청렴도 제고를 위해 구성·운영하고 있는 달서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의 2025년도 운영상황을 「대구광역시달서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에 보고함.

2. 주요내용

가.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

1.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제도의 도입취지
2. 달서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3. 달서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위촉현황

나.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직무 등

다. 고충민원 처리절차 및 현황

1. 고충민원의 조사·처리 등
2. 고충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
3. 2025년도 「구민고충처리위원회」 민원접수 및 처리내역
4. 주요 고충민원 처리결과

3. 향후 추진일정

- 달서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2025년도 운영상황 공표: 2026. 3월 중

- 2025년도 -
달서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상황 보고서

달서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제1장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

- 1.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제도의 도입취지1
- 2. 달서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1
- 3. 달서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위촉현황3

제2장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직무 등3

제3장 고충민원 처리절차 및 현황

- 1. 고충민원의 조사·처리 등4
- 2. 고충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5
- 3. 2025년도 「구민고충처리위원회」 민원접수 및 처리내역6
- 4. 주요 고충민원 처리결과10

이 보고서는 「대구광역시달서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2025년도 달서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의 운영상황을 달서구 의회에 제출하기 위하여 작성하였으며, 달서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의 고충민원 접수·처리·의견표명 등의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제 1 장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

1.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제도의 도입취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부터 제38조까지에 따라 대구광역시달서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함으로써 고충민원의 처리와 그와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의 개선 등을 통하여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나아가 구정 전반의 투명성과 청렴도 제고를 그 목적으로 한다.

2. 달서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가. 위원회 구성

「대구광역시달서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로 한다)에 따라 고충민원의 합리적인 처리 및 의견표명, 제도개선 권고 등을 통해 국민권익을 보호하고자 설치되었다.

조례에 따라 위원회는 3인 이내로 구성하되,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며, 위원회 위원은 공개모집하여 대구광역시 달서구 의회의 동의를 거쳐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원은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속기관과 특별한 이해관계(「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호 준용)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의 직을 겸할 수 없으며,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는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5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었던 사람
4. 건축사·세무사·공인회계사·기술사·변리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5.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시민 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나. 위원 임기 및 신분보장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궐위 시에는 새로운 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기는 새로 개시된다. 위원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와 다르게 해촉할 수 없다.

1. 위원회 위원의 직무를 이행하지 못하였을 경우
2. 조례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속기관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4.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5. 심신상의 장애,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

다. 위원장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임명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라. 위원회 위원 결격사유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정당법」 제23조에 따라 정당에 입당한 당원,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은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3. 달서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위촉현황

가.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현황

(2026. 1월 기준)

직 위	성 명	위촉기간	자격요건 및 주요이력	비고
위 원	정진국	2024. 1. 10. ~ 2026. 1. 9. (1회 연임, 재위촉)	시민사회단체 추천 (매일신문사 국장 역임)	
위 원	이대현	2026. 1. 1. ~ 2027. 12. 31.	시민사회단체 추천 (매일신문사 논설실장 역임)	

나. 근무장소: 청렴감사실 내(독립공간, 3평정도)

다. 운영방법: 주3일 근무(매주 월·수·금 근무)

라. 2025년도 예산편성 및 집행 현황

- 활동수당: 편성 23,400천원 / 집행 23,100천원
- 운영경비: 편성 1,200천원 / 집행 1,200천원
- 집행잔액: 300천원 반납

제 2 장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직무 등

1.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직무 및 의무

가. 위원회 직무

위원회는 조례 제6조에 의거하여 고충민원의 조사와 처리 및 이와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고충민원 처리과정에서 관련 행정제도 및 그 제도 운영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권고 또는 의사표명, 위원회가 처리한 고충민원의 결과 및 행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조사 및 평가, 반복적이고 고질적인 민원에 대한 조사·처리·조정·중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위원회에 위임·의뢰 하는 사안의 조사·처리 등의 직무를 수행한다.

나. 직무 제외사항

구민고충처리위원회는 위원회로 고충민원이 신청이 된 경우 조례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나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직무로 보지 않는다.

1. 구의회에 관한사항
2. 행정심판, 재판 등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판결로 확정된 사항
3. 법령에 따라 화해·알선·조정·중재 등 당사자 간의 이해 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4. 감사원이나 그 밖의 행정기관에서 감사·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
5. 검찰·경찰 또는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수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

다. 비밀유지의 의무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으로 있거나 있었던 사람은 비밀유지의 의무에 따라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라. 회의운영

위원은 상호 독립하여 직무를 수행하되, 시정권고, 제도개선권고, 감사의뢰 결정에 관한사항, 종전 의결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사항 및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한다.

제 3 장 고충민원 처리절차 및 현황

1. 고충민원 조사·처리 등

가. 고충민원 신청

고충민원은 누구든지 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서면으로 신청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서면으로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로 신청할 수 있다.

나. 고충민원의 조사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접수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7일 이내에 조사에

착수하고, 1개월 이내에 조사를 종료하여야 한다(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30일 범위에서 연장 가능). 위원회가 고충민원을 조사할 경우에는 관련부서에 그 취지를 통보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인 또는 관련 대상 기관에 대하여 질문 및 현황을 청취 할 수 있으며, 조사에 필요한 자료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가 직접 조사·처리하기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된 고충민원은 이를 관련 부서에서 처리할 수 있게 이첩할 수 있다. 또한 고충민원 신청인이 고충민원 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과 직·간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경우, 고충민원의 원인이 발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경우, 허위 또는 그 밖에 조사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사를 아니할 수 있다.

다. 의견표명 및 의견제출

위원회는 고충민원의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합의를 권고하거나 조정할 수 있고, 조사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구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시정 또는 감사요구, 권고, 제도 개선을 위한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시정 또는 제도개선의 권고를 하기 전 구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과 신청인 또는 이해 관계인에게 미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라. 처리결과 등의 통보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조사하지 아니할 경우와 처리기간이 1개월 이상 걸릴 경우에 그 취지와 이유를 붙여 신청인에게 조속히 통지하여야 하며, 고충민원 조사를 착수한 경우와 조사가 완료 된 경우에는 3일 이내에 그 사실 및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2. 고충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

가. 분야별 고충민원 접수현황

<단위: 건>

계	건축	건설	교통·주차	복지·문화	도시	청소	기타
12	8	-	2	1	-	-	1

나. 처리유형별 고충민원 현황

- 의견표명(6건), 합의권고(1), 이송(4), 기각(1)

3. 2025년도 「구민 고충처리위원회」 민원접수 및 처리내역

연번	접수일자	민원제목	민원내용	처리결과	관련부서
1	2025. 1. 2	건축물관리 대장의 용도와 다른 상가 운영 관련 조치 요청	○ 월배로 ◆◆상가 건축물 관리대장 상 용도에 맞지 않는 점포가 불법 입점 하여 영업행위를 하고 있어 이에 대한 조치 요청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서 미용원과 의원은 동일한 제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하고 있어 관련법 위반사항을 발견할 수 없으며, 신청인의 민원사항은 수용하기 어려워 기각 【기 각】	위생과
2	2025. 1. 2	불법건축물 (컨테이너)의 설치에 따른 철거 요청	○ 진천로 소재 ☆☆식당에서 행정기관의 불법 건축물 철거 요청에 따라 자진 철거 하였으나, 컨테이너에 이 동용 비퀴를 장착하여 동일한 장소에 설치 하여 재 철거 요청	○ 신청인이 철거 요청한 컨테이너는 「건축법」 제20조 제3항의 가설건축물에 해당하고, 이는 건축법상 허가 대상이 될 수 없으나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가설건축물)제5항에 의거 신고의 대상이 되기에 가설 건축물에 대하여 신고를 받아 행정기관에서 통제 관리할 것을 의견표명 【의견표명】	건축과
3	2025. 3. 4.	공직자의 근무 중 내버려 카페 활동 등에 대한 조치 요청	○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살추 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근무 중에 공동주택과 관련한 카페를 운영하는 것은 공무원의 품위 유지를 위반 하는것으로 적절한 조치가 필요	○ 해당민원은 2024. 6월 고충위에 접수되어 처리된 사안과 동일한 내용이며, 당시 청렴감사실에서 조사를 통해 해당 공무원을 문책하였으며, 해당 부서에 관련 공무원의 근무기강 확립 등을 위해 교육 실시 할 것을 의견표명 【의견표명】	건축과

연번	접수일자	민원제목	민원내용	처리결과	관련부서
4	2025. 3. 12.	월배지역 이면도로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 예방 관련 대책 마련 요청	○ 진천동 ○○○유치원 주변 등은 어린이보호구역 임에도 불구하고 과속차량과 불법주정차로 인해 사고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실정으로 예방 대책 필요	○ 교차로 주변 주차금지 구간으로 지정, 이동식CCIV로 수사단속 실시, 불법주차 예방을 위해서 주정차금지 노면표시 및 탄력봉 설치, 보행자통행로 확보를 위해 U형볼라드 설치, 주정차금지 노면표시의 황색 실선으로 수정, 교차로 알림이 설치, 보행자 방호울타리 설치, 어린이보호 구역표지판 설치 등 사고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 의견표명 【의견표명】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
5	2025. 3. 21.	건축물 용도 변경일자 정정 신청 관련 고충 민원	○ 건축물 용도변경 일자 정정을 요청했으나 건축과에서는 용도 변경허가로 판단하여 용도변경 일지를 법적 처리 시한(2024. 5. 2)으로 소급하여 정정해 줄 수 없다고 하여 이에 대해 시정 요청	○ 「부패방지법」 제41조(고충 민원의 조사) 및 제43조(고충 민원의 이송 등), 「대구광역시 달서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고충 민원 조사방법)에 의거 기 접수된 달서구 청렴 감사실로 이송 【이 송】	건축과
6	2025. 4. 16.	청소년수련관 수영장 회원 모집 시 신규 회원에 대한 불공정한 차별	○ 청소년수련관 수영장 신규회원 모집과정에서 기존 회원들과 차별을 두어 공정한 회원접수 시스템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	○ 「대구광역시 달서구 체육 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제4조에서는 구청장은 체육 시설의 이용실태를 반기별로 점검하고 이용도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근거하여 청소년수련관 수영장 신규회원의 진입 장벽에 대한 지속적인 불공정한 제도에 대해 구민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을 의견표명 【의견표명】	체육청소년과

연번	접수일자	민원제목	민원내용	처리결과	관련부서
7	2025. 5. 19.	◇◇아파트 신축 공사로 인한 인근 건 축물 피해 보상 요청	○ 민원인 소유 2층 상가 주택 바닥의 침하, 침수 및 다수의 균열이 발생함에 따라 보수, 보강 요청 관련하여 건축과에 여러 차례에 걸쳐 민원을 제기 하였으나 미 해결	○ 신축아파트 시공사인 (주)서한의 현장담당 소장 및 건축본부장 협조 방문을 하였고, 이후 시공 사의 회장을 면담하여 민원해결에 협조를 요청하였음. 이후, 고층 처리위원회는 시공사의 의견을 전달 받고 민원인의 주택 피해 보수, 보강에 대한 합의안(보수 비용 700만 지급)을 제시하여 합의권고 【합의권고】	건축과
8	2025. 6. 4.	△△아파트 사용승인 관련 승강기 검사 위법 여부 조사 요청	○ △△아파트 사용승인 관련 승강기검사 합격 후에도 승강기 문의 개폐가 원활하게 작동 되지 않아 일부 주민 들이 승강기에 간하는 사고가 다수 발생하였고, 저하 누수현상이 매우 심한 상태에서 사용 승인에 대한 위법성 조사 요청	○ 「부패방지법」 제41조(고층 민원의 조사) 및 제43조(고층 민원의 이송 등), 「대구광역시 달서구 구민고층처리위원회 구성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고층 민원 조사방법)에 의거 기 접수된 달서구 청렴 감사실로 이송 【이 송】	건축과
9	2025. 6. 5.	△△아파트 사용승인 관련 공무원 처벌 요청	○ 사용승인검사 및 검사 조서에는 승강기 설치 및 구조가 적합한지 체크하는 항목이 존재 함에도 조건부합격 상태의 승강기를 두고 어떻게 적합하다고 판단했는지 조사 및 업무대행사에 대한 수사의뢰 필요	○ 「부패방지법」 제41조(고층 민원의 조사) 및 제43조(고층 민원의 이송 등), 「대구광역시 달서구 구민고층처리위원회 구성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고층 민원 조사방법)에 의거 기 접수된 달서구 청렴 감사실로 이송 【이 송】	건축과

연번	접수일자	민원제목	민원내용	처리결과	관련부서
10	2025. 8. 27.	아파트 지구 내 묶여있는 민원인 소유 토지에 대한 건축행위 허가 요청	○ 본리동 ▽▽아파트 건축허가 당시 제척된 필지가 수십년 전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에 묶여있어 재산권 행사가 불가능함에 따라 건축허가 등 제도 개선 요청	○ 「부패방지법」 제41조(고충 민원의 조사) 및 제43조(고충 민원의 이송 등), 「대구광역시 달서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고충 민원 조사방법)에 의거 기 접수된 달서구 건축과로 이송 【이 송】	건축과
11	2025. 9. 12.	차도및인도위 불법적치물로 인한 교통 체증 유발 개선 요청	○ 상원로 71 도로 인근 중고 이륜차 및 손수레 등 방치된 불법적치물로 인해 교통 체증을 유발함에 따라 개선 요청	○ 민원인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여 교통방해 및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관련 부서에서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것을 의견표명 【의견표명】	교통행정과 · 주차관리과 · 도시디자인과
12	2025. 12. 5.	폐업된 숙박업소 인근 화재 등 안전사고 우려 조치 요청	○ 성서모다아울렛 인근 폐업된 숙박업소 주변 쓰레기 방치 및 수목 관리 미비로 화재 등 안전사고 우려에 따라 도시미관 정비 요청	○ 폐업된 숙박업소의 경우 사유지 이므로 건축물 등의 유지 관리 책임은 토지 소유주에게 있음. 다만, 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해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건축물 관리법」 과 건물의 붕괴위험 등 급박한 안전사고 우려가 있을 때 긴급 조치의 근거가 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관련 부서에서 화재 예방 등 안전조치를 강구할 것을 의견표명 【의견표명】	건축과

4. 주요 고충민원 처리결과

① 월배지역 이면도로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예방 관련 대책 마련 요청

□ 민원내용

- ▶ 월배지역(진천동 일대)은 전반적으로 도시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아 2차선 폭 정도의 골목들이 도로와 보행로 구분 없이 복잡하게 얽혀 있음. 또한, 주차 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불법주차 차량으로 인한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고있는 실정임.
- ▶ 특히, ◎◎유치원 주변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주차 및 과속차량으로 인해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 ▶ 이에 따라, 관련 부서에서는 월배지역 주택가 이면도로 불법주차 단속과 이면도로 횡단보도 설치 등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을 세워주기 바람.

□ 사실관계 확인

- ▶ ◎◎유치원 인근은 15개 빌라 및 상가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주거지역이며, 이면도로는 인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으며, 주변에 월배시장이 있어 차량의 통행이 많은 지역임.
- ▶ 또한,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에는 8개의 과속방지턱이 설치되어 있고, 생활 및 방범용 cctv가 2대 설치 되어 있으나, 별도의 고정식 주차단속 cctv는 설치되어 있지 않아 불법주차가 만연하고 있음.

□ 의견표명

- ▶ 관련부서(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에서 주정차금지구간 지정, 노면 정비 및 주차 단속안내 현수막 게첨, 이동식 cctv를 활용한 수시 단속 등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사고 예방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중에 있음.
- ▶ 아울러, 운전자와 보행자의 눈에 잘 띄는 교통안전시설의 설치와 고정식 주차단속 cctv 설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 또한, 어린이보호구역 인근 불법주정차 단속은 반드시 필요하고,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강화, 주차장 공급 확대 등 근본적인 정책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의견표명 함.

□ 처리결과(부서 조치내역)

- ▶ 관련부서(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U형볼라드 설치, 주차금지선·반사경·교차로 알림이·방호울타리 등 교통시설물 설치를 완료 하였음. 또한, 이동식 cctv를 활용한 단속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으나, 고정식 주차단속 cctv의 경우 주변도로 여건과 예산사정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검토 중에 있음.

□ 관련법령

▶ 「도로교통법」

제4조(교통안전시설의 종류 및 설치·관리기준 등) ① 교통안전시설의 종류,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관리기준, 그 밖에 교통안전시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관리기준은 주·야간이나 기상상태 등에 관계없이 교통안전시설이 운전자 및 보행자의 눈에 잘 띄도록 정한다.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및 관리) ① 시장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나 장소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9조(보호구역에서의 필요한 조치) ① 시·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 또는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보호구역에서 구간별·시간대별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차마(車馬)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것
2. 차마의 정차나 주차를 금지하는 것
3. 운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하는 것
4. 이면도로(도시지역에 있어서 간선도로가 아닌 도로로서 일반의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를 말한다)를 일방통행로로 지정·운영하는 것

② 공공수영장 회원 모집시 신규 회원에 대한 불공정한 차별 시정 요청

□ 민원내용

- ▶ 달서구 청소년수련관에서는 수영강습을 위한 회원모집을 매월 실시하고 있으나, 초급반 모집과정에서 기존 회원을 우선적으로 접수하는 등 특정 시간대에 신규회원들의 진입이 어려움.
- ▶ 공공수영장이 특정 회원들만 수영장을 이용하는 것은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매우 불공정하며, 편의주의에 입각한 잘못된 운영 관행으로 공정한 이용시스템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도개선을 주장함.

□ 사실관계 확인

- ▶ 달서구 청소년수련관은 1997년도에 준공되어 청소년체육팀 외 6개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계명문화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하여 운영 중에 있음.
- ▶ 해당 시설은 청소년 프로그램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수영장의 경우 청소년이 이용하지 않는 시간대에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성인반 수영 강좌를 운영하고 있음.
- ▶ 기존회원들은 특정기간 내에 우선적으로 강좌를 신청할 수 있어 지역주민들에게 공평한 기회가 부여되기 어려움이 있는 시스템임.

□ 의견표명

- ▶ 현재 청소년수련관 수영 강좌 신청은 기존 회원 우선 재 등록 후 잔여분에 한해 신규회원을 받고 있어, 신규회원의 진입 장벽에 대한 지속적인 불공정한 제도의 개선이 요구됨에 따라 공공체육시설에 걸맞게 지역주민들에게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 또한, 회원모집 시스템 변경 시 기존회원들의 반발이 예상됨에 따라 이해관계자 간담회, 여론 청취, 제도개선에 대한 홍보 등을 통해 기간을 두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의견표명 함.

□ 처리결과(부서 조치내역)

- ▶ 관련부서(체육청소년과)에서는 기존회원들에게 수영장 강좌 우선 접수 기회를 제공함에 따라 신규회원들의 등록이 어렵다는 의견에 대해 공감하며, 신중한

논의와 검토를 통해 신규회원과 기존회원들이 공정하게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관련법령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체육 활동에 필요한 체육시설의 적정한 설치·운영과 체육시설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적절한 지도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8조(체육시설의 개방과 이용) ② 제7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공공기관은 기관의 업무나 시설의 유지·관리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해당 체육시설을 개방하여 지역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대구광역시달서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4조(시설의 개방 및 이용) ② 구청장은 체육시설 및 공원운동시설의 이용 실태를 반기별로 점검하고 이용도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필요시 수시 점검·보수하여 지역주민이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폐업된 숙박업소 인근 화재 등 안전사고 우려 조치 요청

□ 민원내용

▶ 폐업된 숙박업소 인근은 성서산업단지 의류 및 일반상가 밀집지역으로 주말의 경우 유동 인구가 많으며, 3년 이상 되어 내부 주차장에는 쓰레기가 방치되어 있어 환경정비가 필요함.

▶ 또한, 출입문이 개방되어 있어 야간엔 우범지대로 전락하고 있으며, 흡연자들의 담배꽂초 투기로 화재의 위험성도 있음. 아울러, 건물 내 수목이 인근 전신주를 침범하여 안전사고 발생의 염려가 있음.

□ 사실관계 확인

▶ 폐업된 숙박업소인 ○○호텔은 성서산업단지 내 상업지역인 모다아울렛 인근에 위치한 9층짜리 건축물로 주변에 상가와 대형 의류 유통점이 있음.

- ▶ 호텔 내부에는 많은 쓰레기와 담배꽂초, 낙엽들이 방치되어 있고 호텔 입구가 일부 개방되어 외부인의 무단출입이 가능함.
- ▶ 또한, 후문 출입구에 식재된 나무가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어 인근 전신주를 침범하여 가지 전정 등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며, 2025년 4월경 실제 담배꽂초 무단 투기로 인해 화재가 발생한 적이 있었음.

□ 의견표명

- ▶ 해당 지역은 사유지이므로 건축물의 유지·관리 책임은 소유자에게 있으나, 지역주민의 안전과 사고예방 차원에서 관련부서(건축과·공원녹지과)에서는 소유자가 의무를 다하도록 독려하고 감시하는 역할에 그치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음을 의견표명 함.

□ 처리결과(부서 조치내역)

- ▶ 관련부서(공원녹지과, 건축과)에서는 해당 지역이 사유지이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가 건축물 유지·관리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나, 수목 관리의 경우 위험 수목 처리 지원 관련 조례가 제정되어 지원대상에 적합한 수목의 경우 소유자가 직접 신청 함으로써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 관련법령

▶ 「건축물관리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건축물관리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홍보를 활성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민법」

제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①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복구하여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대구광역시달서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위험수목 처리 지원)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생활 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지표면으로부터 1.2m 높이의 지름이 20cm 이상인 대형 위험수목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거 및 가지치기
 - 가. 죽은 나무나 큰 마른 가지의 낙하 등으로 인해 주변 시설물 및 보행자에 피해가 우려되는 나무
 - 나. 나무줄기 부패목, 병충해 피해목 등 쓰러짐 발생 시 주변 시설물 및 보행자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나무
 - 다. 나무줄기가 기울어져 있거나 나무 모양의 비대칭 또는 과도한 생육(生育)으로 강풍, 태풍 발생 시 쓰러짐이 우려되는 나무
2. 풍수해로 인한 피해수목의 제거 및 가지치기